

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3월 5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2월 22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3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3.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)

□ 제안이유

-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0년부터 사업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,
- 1997년 택지조성공사 완료 및 분양절차 마무리로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상실되어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24. 1. 17. ~ 2. 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규제사전심사,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- 본 폐지조례안은 김포공항 확장에 따라 공항시설 결정 구역에 편입된 주민을 위해 택지 조성 및 이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0. 7. 31. 제정되었으나,
- 적용대상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마무리(1997.10.) 및 특별회계 존속 기한(2023.12.31.)이 만료되는 등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되어 있는 사업비 집행잔액¹⁾은 향후 세입 처리 등을 통해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해야 할 것임.

1) 금 9,784,000원 (2024년 2월 기준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1부.

□ 공항이주단지 조성 사업개요

- 조성경위: 김포공항 확장에 따른 공항시설 결정 구역에 편입된 주민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사업 시행
- 사업기간: 1989년 ~ 1997년 10월(택지조성공사 완료)
- 사업비: 281억원(국비)
- 이주대상: 354동 960세대(공항동, 과해동, 오곡동, 오쇠동 일대)
- 조성내용: 324필지(공항동 1227 일대, 공항동주민센터 주변)
- 시행청: 강서구(국토교통부, 서울시와 협약 체결)

□ 택지 분양 현황

- 분양대상: 324필지(분양 완료 305필지, 미분양 19필지)
- 미분양 필지 소유권 이전(2011. 12월): 강서구 → 서울지방항공청

□ 사업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정(1990.7.31.)
- 조례 개정(2018.12.28.): 제6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신설
 ※ 2018년 당시 공항이주단지 잔여택지 관련하여 대부 수익금 정산 등 잔존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2023.12.31.까지)

□ 특별회계 운영 현황

- 사업비 특별회계 운영내역(1990년~1997년)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집행잔액	비고
금액	28,149	27,441	708	

-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예치: 708백만원(1997년)
 - 주민 이주비 등으로 사업비 집행(1997년~2003년)
- 세입세출외현금 예치액: 금 9,784,000원(2024. 2월 기준)

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주민이주 협약서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탁 협약한 김포 국제공항 시설구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지역중 사업의 시행 잔여지역의 주민이주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강서구청장에게 재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범위) 서울특별시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은 교통부장관과 협약 체결한 공항시설결정구역중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의 주민이주 업무 중 일부를 강서구청장(이하 "을"이라 한다)에게 재 위탁 한다.

제3조(근거) 본 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다.

제4조(이주대상) (1) 이주대상은 공항시설결정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하고, 강서구 공항동, 발산동 지역의 주민 및 강서구 오쇠동 37 번지상의 주민(가옥- 2호)은 이주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이주대상부락과 동일 부락으로 지정된 공항시설결정구역의 잔여 가옥(73호)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주대상에 포함한다.

제5조(업무분담)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.

(1) "갑"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가. 교통부장관과의 김포공항시설결정지구내 주민이주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.
- 나. 이주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
- 다. 이주단지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 승인
- 라. 농지전용 협의
- 마.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
- 바.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

(2) "을"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가. 이주단지 후보지 위치 선정 보고 및 부지매입

나. 이주단지의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

다. 택지조성 설계 및 공사시행

라.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

마. 입주자 선정 및 분양자 지정

바. 세입자 및 입주권 부여 대상자 확정

사. 사업비 및 제수수료의 출납

제6조(비용의 납입) (1) "갑"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주단지조성 설계 및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"을"에게 분할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(2) "을"은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"갑"에게 청구하고 "갑"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"을"이 정한 시기 및 장소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(3) 각종 수수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6조 2항에 의한다.

제7조(비용의정산) "을"은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시행 내역을 첨부하여 비용정산 결과를 "갑"에게 통보하고 "갑"은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

제8조(등기명의) 이주단지로 매수한 토지중 공공용에 제공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귀속한다.

제9조(분양방법 및 대금의 국고납입) (1) 이주단지의 대지 분양가는 도로 등 공공시설비를 포함한 단지 조성비 전체를 분양대지로 나누어 결정한다.

(2) "을"은 확정된 분양대상자에게 결정된 분양가격에 의거 분양한다.

(3) 분양대금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입자대책) 이주대상 지역의 세입자 대책은 "갑"이 결정하고 그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부장관이 부담하도록 "갑"이 조치한다. 단, 세입자 대책(안) 수립 및 자료제공은 "을"이 한다.

제11조(발생이자의 처리) 교통부장관이 본 협약에 의하여 "을"에게 납부한 모든 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는 "을"에게 귀속한다.

제12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(1) 본 협약 내용은 "갑"과 "을"이 상호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
(2) 본 협약은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완공, 분양 및 비용의 정산이 완료되면 해지된다.

제13조(이의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내용중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부 칙 -

제1조(효력발생) 본 협약은 "갑"과 "을"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(협약서보관) 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후 "갑"과 "을"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1992. 5

(갑) 서울특별시



(을) 강서구청

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